

위례과천선의 (가칭)두데미역, 송례역,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(5호선)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청 원 자 : 김성일(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 80 송파레이크파크 호반써밋Ⅱ 1407동 202호) 외 10,696명
- 소개의원 : 유정인 의원(국민의힘, 송파 제5선거구)
- 접수일자 : 2025. 3. 26.
- 회부일자 : 2025. 3. 27.

2. 청원요지

- 수도권 광역교통망 강화를 위한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은 현재 노선에 서 위례신도시 및 송파구 남부지역이 제외되어,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 고 있음
-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고, 위례과천선의 종점으로 예상되는 ‘법조타운 역’에서 북위례 중심지까지는 약 2.5km, 버스 이용시 20~30분이 소요되어 주민들 이동권에 제약이 있음

- 이에 위례과천선 노선에 (가칭) 두데미역, 송례역(송파위례역), 북위례역 신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연장 연결하여 철도망 간 연계도로 위례과천선의 합리적 노선 조정과 역사 신설로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줄 것을 청원함

3. 소개의원 요지

- '24년 11월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앞서 위례신도시 및 송파구 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(가칭) 두데미역, 송례역(송파위례역), 북위례역 신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연장 연결하여 철도망 간 연계도로 위례과천선의 합리적인 노선 조정과 역사 신설로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줄 것을 청원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- 제출의견: 원안가결
 - 위례과천선은 국가시행 광역철도로서 광역철도의 연장사업은 국가(국토교통부)에서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추진가능
 -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

1) 교통정책과-제330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('25.4.9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청원의 개요

- 동 청원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노선을 연장하여 (가칭)두데미역, 송례역(송파위례역), 북위례역 신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의 연장을 통해 기존 철도 노선과의 환승 및 철도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

※참고1: 위례과천선 예상노선도 및 청원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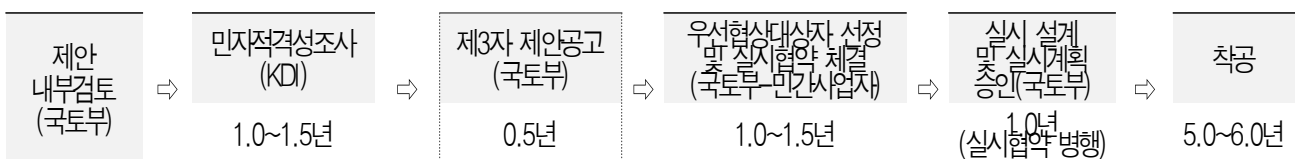
 자료: 국토교통부	
위례과천선 예상노선도(2024.11월 기준)	위례과천선의 (가칭)두데미역, 송례역,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(5호선) 연장요청에 관한 청원 도면

나. 검토의견

■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및 계획

- 위례과천선(압구정~정부과천청사·법조타운, 총 연장 28.25km)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(국토교통부)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음
- 또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'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(KDI)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11월 7일 통과²⁾한 이후, 국토교통부는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³⁾한 바 있고 향후 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음

※참고2: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



2) 위례~과천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(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, '24.11.7.)

3) 위례~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(국토교통부, '25.2.)

※참고3: 위례과천선 추진현황

- 노 선 명: 위례과천선(광역철도)
- 구 간: 정부과천청사 법조타운 ~ 압구정
- 사업내용: 연장 28.25km - 사 업 비: 3조 1,876억원
- 사업목적: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제고
- 추진경위
 - '16.06.27.: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(국토부)
 - '19.10.: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(서울시→국토부)
 - '20.05.: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위례과천선 포함(국토부)
 - '21.07.: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(국토부)
 - '21. 12: 위례과천선 민자제안(대우건설 →국토부)
 - '22.09.: 민자적격성조사 착수(KDI)
 - '24.11.: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통보(기재부 → 국토부)
 - '25.02.: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국토부)

■ 위례과천선의 (가칭)두데미역, 송례역,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(5호선)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

- 위례과천선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및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까지(연장 28.25km, 정거장 약 15~17개, 차량기지 1개소) 이어지는 'Y'자 형태 노선으로 서쪽으로 정부과천청사, 동쪽으로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, 북쪽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까지 이어질 예정⁴⁾임
- 동 청원은 위례과천선을 연장하여 (가칭)두데미역, 송례역(송파위례역), 북위례역 신설 및 서울지하철 거여역(5호선)과의 연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(안)의 종점으로 예상되는 '법조타운역'에서 북위례 중심지역까지는 약 2.5km에 이르며, 대중교

4) “과천-압구정 잇는다” 청신호 켜진 위례과천선, 수혜지 살펴보니(이투데이, '24.11.11.)

통(버스)를 이용하더라도 약 20~30분이 소요됨에 따라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송파 남부지역(가락동, 문정동, 장지동)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또한 위례신도시가 조성되었음에도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등의 사업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철도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기존 도시철도 노선과 위례과천선의 연결을 요청하는 동 청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

- 위례과천선은 최근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고 향후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
- 다만, 동 청원에서 신설요청한 (가칭)두데미역⁵⁾은 위례신사선에도 신설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시는 평면선형 조정에 따른 급곡선 발생으로 열차운행효율성 저하, 타 사업과의 저촉, 사업비 증가, 사유지 저촉 및 기존 정거장 위치이동에 따른 반대 민원발생 등으로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⁶⁾한 바 있음
- 또한 위례과천선과 관련하여 과천시, 서초구, 강남구 등에서 역사 신설 및 노선 연결과 관련된 여러 민원이 제기⁷⁾되었고, 관련 법령⁸⁾에

5) 문정1동에 위치한 지역명, 두데미 → 두데미('19.10.30. 변경)

6) 도시철도계획부-3870('20.4.28.) “위례신사선 경전철 두데미역(가칭) 신설을 청원합니다”

7) 위례과천선 관련하여 역사신설 및 노선연결과 관련된 민원 및 청원

- 서초구: 서초보금자리지구, 우면2지구 주변 “선암IC역” 신설 요청 - 과천시: 과천 주암지구 주변 “주암역” 신설 요청

서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km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신설시 이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장래의 수요 증가 및 철도 사각지대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

<서울시의회 청원>

-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('22.10.13.)
-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 역사설치에 관한 청원('23.2.1.)
- 위례과천선 우면동(선암IC)과 선바위역(4호선), 우면역(태봉로) 경유요청에 관한 청원('24.10.14.)

8)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광역철도)

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”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광역교통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.

4. 표정속도(表定速度,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)가 시속 50킬로미터(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) 이상일 것.